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4. 10. 30.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0. 2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10. 22.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10. 30)

상정, 심사, 가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2.9 법률 제7169호) 및 동법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 대상사업규모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사업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항)

- “가”항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0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사업을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2004.8.10 대통령령제18514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택지개발사업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관내 사업은?
- 답변요지(정상택 청소환경과장) : 상암동 DMC와 상암2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아현동 뉴타운사업지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 재건축사업은 해당되지 않는가?
- 답변요지(정상택 청소환경과장) : 해당되지 않음.

###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 7169호) 및 동법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 대상사업규모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 사업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조2항)

나. “가”항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안 제7조)

## 3. 관계법령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2.9. 법률제7169호)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

## 4.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기 타

가. 입법예고(2004. 9. 20 ~10. 11)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체·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4. 10. 1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0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7조중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b>제2조 (정의) (생략).</b></p> <p>1. (생략)</p> <p>2. “사업시행자” 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u>100만제곱미터</u>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p> <p><b>제7조 (징수 등) 가산금, 증가산금, 채납처분 등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u>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u></b></p>	<p><b>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p> <p>1. (현행과 같음)</p> <p>2. ----- ----- ---<u>30만제곱미터</u>--- ----- -----</p> <p><b>제7조(징수 등) -----</b> ----- ----- --- <u>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u></p>
-----------------------------------------------------------------------------------------------------------------------------------------------------------------------------------------------------------------------------------------------------------------------------------	---------------------------------------------------------------------------------------------------------------------------------------------------------------------------------------------------------------------------------